

#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모집공고

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하여 일반형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## 1. 근무조건

- 근무기간: 2016년 1월 ~ 12월(12개월)
  - 근무시간: 월 ~ 금, 1일 8시간(09:00 ~ 18:00)
  - 근무내용: 행정관련업무보조, 장애인편의시설모니터요원
  - 근무지
    - 행정관련 업무보조: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, 장애인복지시설
    -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요원: 장애인편의시설 성동구지원센터
  - 보수: 월 1,261천원(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)
- \*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## 2. 모집분야 및 기간

- 모집인원: 20명
- 모집분야: 행정관련 업무보조,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요원
- 모집기간: 2015. 12. 7.(월)~12. 16.(수) 09:00~18:00(토·일 제외)

3. 신청자격: 성동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으로 담당 업무수행이 가능한 장애인

- ※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대상
-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
  -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
(단, 소득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무소득사실증명원을 관할세무서에서 발급 받아 제출시 참여 가능)
  -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(피부양자는 제외)
  -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자
  -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
(단,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)

## 4. 선발방법

-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
  - 우선 선발 대상

- 1순위: 신규 참여 중증(1~3급)장애인
- 2순위: 중증장애인, 여성장애인,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권자, 차상위계층) 장애인
- 반복참여 제한 기준
  - 반복참여는 최대 2년까지만 허용  
( 단,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참여가능)

#### 5. 면접심사 및 선정

- 면접일(예정)
  - 일 시: 2015. 12. 24.(수)
  - 장 소: 성동구청 9층 사회복지과 회의실
- 선정방법 : 선발기준표에 의거하여 적격성 여부 판단 후 고득점순으로 참여자 순위 결정

#### 6. 제출서류 및 접수처

- 제출서류
  -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(자필서명 필수) 1부.
  - 개인정보 조회·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(자필서명 필수) 1부 .
  -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(주민등록번호 기재 복지카드 앞뒷면 모두).
  -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.  
※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
- 접수방법: 직접제출(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)
- 접 수 처: 거주지 동주민센터(주소와 전화번호 명기)

#### 7. 기타 참고사항

-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화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.

- \*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(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)  
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(이하 "성범죄"라 한다)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(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)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·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·기관 또는 사업장(이하 "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"이라 한다)을 운영하거나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
- \* 「장애인복지법」제59조의3(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)  
① 성범죄(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.
- \*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

□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

- \* 「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」
  - 만 18세미만 및 만18세이상 초·중·고등학생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,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공제 적용
  - 대학생(야간대생 포함, 휴학시 최대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적용하며 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)은 30만원을 공제하고,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공제 제공
  - 65세이상 노인,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30% 공제 적용

- ‘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’ 서식은 동주민센터에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  -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 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.
  - 기타 문의사항은 성동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(☎ 2286-5427/담당 조미영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15년 12월 일

성 동 구 청 장

# 장애인 복지일자리 모집공고

우리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위하여 복지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## 1. 근무조건

- 근무기간: 2016년 1월 ~ 12월(12개월)
- 근무시간: 주 14시간 근무(월 56시간)
- 근무지: 행정기관 및 동주민센터, 장애인복지시설
- 근무내용: 다중이용시설 환경미화 및 급식도우미 등
- 보수 등: 월 338,000원(산재보험 본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)

## 2. 모집기간 및 인원

- 모집기간: 2015. 12. 7.(월) ~ 12. 16(수) 09:00~18:00(토·일 제외)
- 모집인원: 16명

## 3.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

- 신청자격: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
- 선발방법: 공개경쟁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

### ※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대상

-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 
(단, 주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일 경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중복 참여 가능)
-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
(단, 소득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무소득사실증명원을 관할세무서에서 발급 받아 제출시 참여 가능)
-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(피부양자는 제외)
-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자
-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
(단,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)

## 4. 제출서류 및 접수처

제출서류

-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(자필서명 필수) 1부 .
- 개인정보 조회·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(자필서명 필수) 1부.
- 장애인복지카드 사본(앞·뒷면)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.
-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.

접수처: 거주지 동주민센터

접수방법: 직접제출(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)

### 5. 기타 참고사항

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사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.

\*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(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)  
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(이하 "성범죄"라 한다)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(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)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기정을 방문하여 아동·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·기관 또는 사업장(이하 "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"이라 한다)을 운영하거나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

\*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3(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)  
① 성범죄(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.

\*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

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

\* 「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」  
· 만 18세미만 및 만18세이상 초·중·고등학생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,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공제 적용  
· 대학생(아간대생 포함, 휴학시 최대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적용하며 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)은 30만원을 공제하고,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공제 적용  
· 65세이상 노인,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30% 공제 적용

'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' 서식은 동주민센터에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-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

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.

- 기타 문의사항은 성동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(☎ 2286-5427/담당 조미영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15년 12월 일

**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**